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3호

2019년 5월 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8 4 1 호	2019.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2
○ 공	고 제 8 4 8 호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3
○ 공	고 제 8 4 9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20
○ 공	고 제 8 5 7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3
○ 공	고 제 8 7 2 호	2019년 5월 취득세 공시송달	25
○ 공	고 제 8 7 7 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7
○ 공	고 제 8 8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 공	고 제 8 8 8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42
○ 공	고 제 8 8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44
○ 공	고 제 8 9 1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60
○ 보 건 소 공 고 제	4 4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63
○ 보 건 소 공 고 제	4 5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64
○ 간 석 1 동 공 고 제	5 3 호	폐기물처리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65
○ 간 석 1 동 공 고 제	5 4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68

고 시

○ 고	시 제 5 9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71
-----	-----------	-----------------	----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19-841호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 4. 30.

남 동 구 청 장

1.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9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수: 8,652호(단독 1,706호, 다가구 3,134호, 주상용 3,812호)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남동구청 세무과

2. 이의신청방법

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2-453-2419)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남동구청 세무과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8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4.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을 준용, 규칙 일부개정으로 직원 정원 충원 및 직급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체계를 정비,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 조직의 정원(중 1명) : 부장 등, “8명 이내로”를 “9명 이내로”(안 제8조)
- 직원채용 및 자격기준[별표1] 일부내용 수정(안 제10조)
- 조직체계 및 정원[별표2] 일부내용 수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노인장애인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852, FAX 453-58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 별첨

[별첨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을 준용, 규칙 일부개정으로 직원 정원 충원 및 직급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체계를 정비,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센터 조직의 정원(증 1명) : 부장 등, “8명 이내로”를 “9명 이내로”(안 제8조)
- 직원채용 및 자격기준[별표1] 일부내용 수정(안 제10조)
- 조직체계 및 정원[별표2] 일부내용 수정(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관하여”를 “관한”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으로, “센터”를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센터장”을 “센터장, 부장 1명”으로, “8명”을 “9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1인을 포함한 7인”을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한다.

제13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를 “「남동구 공인 조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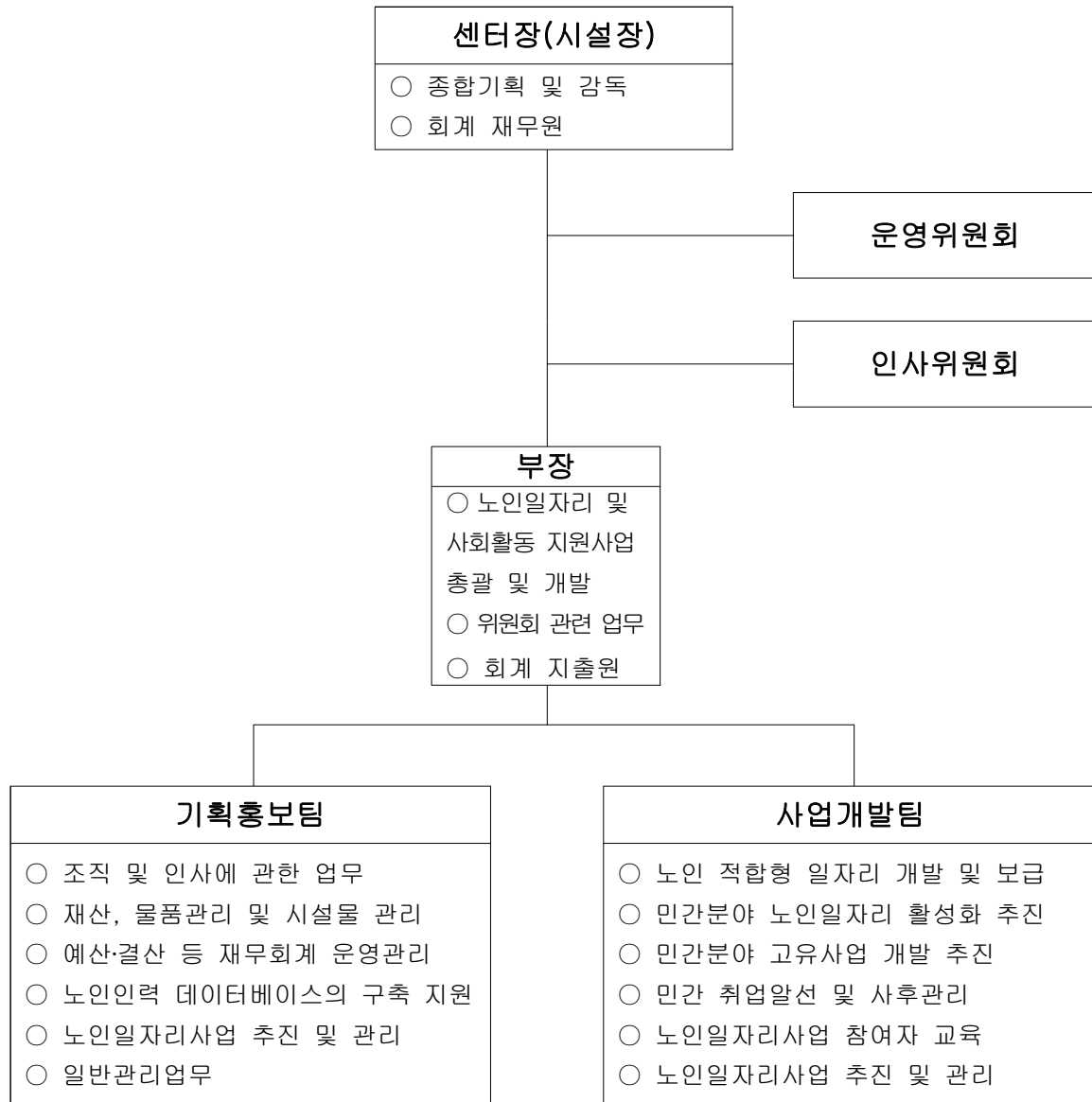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제10조 관련)

직 급		채 용 자 격 기 준
센터장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일 반 직	1급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4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급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급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정보처리, 회계 관련 자격을 소지한 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2]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정원(제11조 관련)

구 분	계	센터장 (시설장)	일 반 직			
			1급 (부장)	2급 (팀장)	3급 (대리)	4급 (주임)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	9	1	1	2	3	2

[별표 3]

공인의 규격(제22조 관련)

< 센터장의 직인 >

3cm	
남동구노인인력 개발센터장인	3cm

< 운영위원장의 직인 >

3cm	
남동구노인인력 개발센터운영위 원회위원장인	3cm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남동구</u> <u>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u> <u>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u>」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u>관하여</u>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u>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u>(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한다) 운영에 <u>관하여</u>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u>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방침)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에 <u>의하여</u> 수행되어야	<u>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u>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u>」----- ----- <u>필요</u>----- ----- --. 제2조(적용 범위) <u>남동구</u> ----- ----- ----- --- <u>관한</u> ----- ----- -----<u>남동구</u> ----- ----- ----- ----- -----. 제4조(운영방침) ① ----- ----- ----- ----- <u>따라</u> -----

한다.

② ~ ⑤ (생략)

제5조(위탁기간) 조례 제4조에 의
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은 3년
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노인
인력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
장"이라 한다)은 센터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
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
행규칙 제24조 및 센터 내부 운
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원의 정원) 노인인력개발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팀장 2
명, 직원 5명 등 8명 이내로 한
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생
략)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위원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기간) ----- 따른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

남동구 -----

-----.

② -----
----- 「사회복지사
업법」 제36조, 같은 법 -----
----- 노인인력개발
센터 -----.

제8조(직원의 정원) -----
----- 센터장, 부장 1명-
----- 9명 -----
---. -----
-----.

제12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현
행과 같음)

② ----- 1명을
포함한 7명 -----

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인사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부 운영규정 내용에 따른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소속의 임·직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경력인정 및 호봉책정)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경력인정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을 따르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 근무경력이외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경력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관리) ①·② (생략)

③ 그 밖에 재원의 관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공인)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

[illegible]

제13조(경력인정 및 호봉책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제17조(보조금 관리)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남
동구 재정운영 조례」-----
-----.

제22조(공인) ① -----

-----.

1. 남동구 -----

개발센터장 직인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

개발센터 운영위원장 직인

3. (생 략)

② (생 략)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
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
례」를 준용한다.

2. 남동구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에 -----

--- 「남동구 공인 조례」---

-----.

현행		개정안	
<별표 1>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		[별표 1]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	
직 급	채 용 자 격 기 준	직 급	채 용 자 격 기 준
센터장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센터장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직	2급	1급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4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급	--	-----2급----- ----- ----- ----- -----
	4급	--	----- ----- ----- ----- -----

현행	개정안																										
<별표 2>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정원 센터장(시설장)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기획홍보팀 ○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 일반관리업무 사업개발팀 ○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table><tr><th>구 분(일반직)</th><th>계</th><th>센터장 (시설장)</th><th>2급 (팀장)</th><th>3급 (팀장)</th><th>4급 (직원)</th></tr><tr><td>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td><td>8</td><td>1</td><td>1</td><td>1</td><td>5</td></tr></table>	구 분(일반직)	계	센터장 (시설장)	2급 (팀장)	3급 (팀장)	4급 (직원)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	8	1	1	1	5	[별표 2]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정원 센터장(시설장)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부장 ○ 노인일자리 및 회계활동 자원사업 총괄 및 개발 ○ 위원회 관련 업무 ○ 회계 지출원 기획홍보팀 ○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 일반관리업무 사업개발팀 ○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table><tr><th>구 분(일반직)</th><th>계</th><th>센터장 (시설장)</th><th>1급 (부장)</th><th>2급 (팀장)</th><th>3급 (팀장)</th><th>4급 (직원)</th></tr><tr><td>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td><td>9</td><td>1</td><td>1</td><td>2</td><td>3</td><td>2</td></tr></table>	구 분(일반직)	계	센터장 (시설장)	1급 (부장)	2급 (팀장)	3급 (팀장)	4급 (직원)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	9	1	1	2	3	2
구 분(일반직)	계	센터장 (시설장)	2급 (팀장)	3급 (팀장)	4급 (직원)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	8	1	1	1	5																						
구 분(일반직)	계	센터장 (시설장)	1급 (부장)	2급 (팀장)	3급 (팀장)	4급 (직원)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	9	1	1	2	3	2																					

현행	개정안																
<별표 3> 공인의 규격 (제22조 관련) < 센터장의 직인 > <table border="1"> <tr> <td>3cm</td><td></td></tr> <tr> <td>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td><td>3cm</td></tr> </table> < 운영위원장의 직인 > <table border="1"> <tr> <td>3cm</td><td></td></tr> <tr> <td>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인</td><td>3cm</td></tr> </table>	3cm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	3cm	3cm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인	3cm	[별표 3] 공인의 규격 (제22조 관련) < 센터장의 직인 > <table border="1"> <tr> <td>3cm</td><td></td></tr> <tr> <td>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td><td>3cm</td></tr> </table> < 운영위원장의 직인 > <table border="1"> <tr> <td>3cm</td><td></td></tr> <tr> <td>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인</td><td>3cm</td></tr> </table>	3cm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	3cm	3cm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인	3cm
3cm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	3cm																
3cm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인	3cm																
3cm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	3cm																
3cm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인	3cm																

[참고자료]

〈2019년도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직제 및 정원

○ 기본원칙

- 직제 및 정원규정은 본 지침을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직원의 구분 및 직급

- 사무국장(부장)은 1급으로 하고, 일반직은 2급, 3급, 4급으로 보함
- 기관장은 1급 이하의 직원 채용 자체적인 공개채용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직급별 정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보조금으로 둘 수 있는 직원 정원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아래의 정원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 인원 및 직급조정 가능함

구 분	계	기관장	1급	2급	3급	4급
시 노인인력개발센터	11	1	1	3	4	2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6	1	1	1	1	2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7	1	1	1	1	3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11	1	1	2	2	5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9	1	1	2	2	3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9	1	1	2	2	3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9	1	1	2	2	3
계양 시니어클럽	6	1	1	1	1	2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5	1	1	1	1	1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9	1	1	2	2	3

※ 정원 및 직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후 조정

※ 단, 인원 증원 또는 직급의 상향조정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인건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함.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849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9.04.26. ~ 2019.05.12.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9.05.12.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부9175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2019. 04.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생년월일	주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18-00624	**부9175	SM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5번길 42 (간석3동 58-1) 앞 노상	오*석	75****	경기도 파주시 당하*길 **, ***호(당*동)	2019.01.18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당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축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18-624	**부9175	SM5	오*석	75****	경기도 파주시 당하*길 **, ***호(당*동)	압류	파주시시설관리공단	2014.06.12	시설운영팀-3129	주차요금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압류	경기도 파주시	2016.07.19	징수과-9593	지방세 체납
						압류	파주경찰서	2018.04.24	2018D2806009008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80670171653331)
						압류	파주경찰서	2018.05.02	2018D2806009638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80670171688664)
						저당	(주)에이원대부캐피탈 *저당을부번호 : 4106-2015-013128	2015.11.26	6,000,000	
						압류	경인지방우정청	2018.05.15	회계정보과-3350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압류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2018.09.10	차량등록사업소-308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20180607008914)
						압류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2018.09.10	차량등록사업소-308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20180607008915)
						영치	인천광역시 남세협력담당관	2018.10.30		남동구 간석3동 85-9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857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조7136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4.29.(월) ~ 5.14.(화)
3. 내 용
 -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 4.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4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조 7136	정*원	2019-04-26	폐문부재	후면 미인증 LED 부착	2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872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서**준 외 10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19년 2월 독촉 및 19년 4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19년 2월 독촉 및 19년 4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19.4.30.을 2019.5.31.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9. 5.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군구	등기번호	전자납부번호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배달일자	수령인	미배달사유	등록자명	송달내용	접수
남동구	1072885418165	2820012019704099390	880308-*****	서**준	1015012019042522022225	201904190901		보관기간경과반송			Y
남동구	1072885418166	2820012019704099354	700619-*****	설**	1015012019042521022271	201904191040		폐문부재			Y
남동구	1072885418169	2820012019704099381	020104-*****	윤**림	1015012019042521022274	201904191040		폐문부재			Y
남동구	1072885418173	2820012019703984158	750204-*****	황**실	1015012019042550022917	201904190900		폐문부재			Y
남동구	1072885418174	2820012019703984167	940120-*****	황**희	1015012019042522022920	201904261242		보관기간경과반송			Y
남동구	1072885418175	2820012019703984176	920321-*****	김**달	1015012019042580022921	201904151403		이사불명			Y
남동구	1072885418177	2820012019704099416	115411-*****	(주)누**전**	1015012019042700023509	201904161351		이사불명			Y
남동구	1072885418186	2820012019704105284	620118-*****	전**자	1015012019042583023903	201904191040		폐문부재			Y
남동구	1072885418187	2820012019704108905	660616-*****	유**완	1015012019042650024008	201904150930		수취인불명			Y
남동구	1072885417675	2820012019703261394	460601-*****	강**자	1015012019022570007687	201902192230		폐문부재			Y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877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의 규정에 따라 폐업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말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내용 참조
3. 공고기간 : 2019. 05. 02.(목) ~ 2019. 05. 22.(수) (21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 2019. 05. 23.(목)
5. 직권말소 예고 대상 업소

연번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행정처분)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018-6)	킹 PC	이 * 수	남동구 앵고개로934번길 51, 102호 (논현동,흥인빌딩)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직권말소

6.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7. 유의사항

- ① 당사자(대표자)께서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남동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32-453-2139)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만일 공고 기간 내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제출기한 : 2019. 05. 22.(수) 18:00까지
- 문의사항 :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 (☎032-453-2143)

2019. 05. 0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8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 구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세부 명칭 및 위치, 업무와 기능을 구체화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보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및 위치의 세부사항 보완 (안 제3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와 기능 체계적 규정 (안 제4조)
- 위탁 운영의 근거 규정과 수탁자 의무 신설 (안 제8조,9조)
-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자체 운영규정 및 종사자 보수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13조)
-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 명시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노인장애인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521, FAX 453-58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우리 구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세부 명칭 및 위치, 업무와 기능을 구체화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보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및 위치의 세부사항 보완 (안 제3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와 기능 체계적 규정 (안 제4조)
- 위탁 운영의 근거 규정과 수탁자 의무 신설 (안 제8조,9조)
-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자체 운영규정 및 종사자 보수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13조)
-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 명시 (안 제1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59조,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4조,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급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남동구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업무와 기능) 복지시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
 - 가.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 나.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 다.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 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장애인의 민원사무 처리 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가. 지적, 자폐성 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 나.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
 - 다. 이용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의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유상적 임금 지급
 - 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상담
 - 다. 직업적응 훈련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 라. 문제해결 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종합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에 따른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을 신청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① 복지시설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 등 모든 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가된 재산은 남동구 재산으로 귀속한다.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의 의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기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사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복지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종사자 및 보수)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및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청장과 수탁자간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운영한다.

제14조(수익사업)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복지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된 장애인 복지시설 위·수탁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위·수탁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별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설 유형	명 칭	위 치
장애인종합복지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만수동) 별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 23번길 17(만수동)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 23번길 17(만수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열린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 23번길 17(만수동)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30][[시행일 2012.3.31]]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3.30, 2019.1.15]
-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개정 2011.3.30, 2019.1.15]
-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3.30., 2019.1.1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 (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2017.10.24] [[시행일 2018.4.25]]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제44조 (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본조개정 2012.8.3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본조개정 2012.8.3 제23조에서 이동]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888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9**무4001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5. 2.(목) ~ 5.17.(금)
3. 내 용
 -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 5. 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4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무4001	조*환	2019-05-01	폐문부재	전조등 전구 색상 상 미(청색) 및 안개 등 미인줄 LED 설치.	2162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동 ***호(남촌동, **아파트)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8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안이유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강화를 통한 우리 구 공무원의 윤리수준 제고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의2)
- 나. 알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 보완(안 제11조 3항 제6호, 7호)
 - 공무원의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 유형 추가
- 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규정 신설(안 제13조2)
 - 갑질개념, 갑질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지하는 규정 신설
- 라.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규정 신설(안 제14조의4)
 -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견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독기관의 거부조치 등 신설
- 마.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규정 보완(안 제18조 1항)
 -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직자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는 행위유형 규정

- 바. 행동강령 교육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및 교육 내용 구체화 (안 제22조 1항, 3항)
- 행동강령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감사실장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감사실 / 전화 032-453-2072, 팩스032-453-20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관계법령 발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3조의3, 제14조의2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장에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를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로, “상당한 후 처리”를 “상당하여

야 하며, 행동강령 책임관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제1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의2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u> <u>행동강령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u>인천광역시 남동구</u>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바. <u>인천광역시 남동구</u>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u>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u> 제1조(목적) ----- ----- ----- ----- <u>남동구</u> ----- ----- -----. 제2조(정의) ----- -----. 1.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바. <u>남동구</u>----- ----- ----- -----

사. (생 략)

2. ~ 4. (생 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본청·구의회·직속기관 소속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 서비스·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직·일용직 그 밖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무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② (생 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 남동구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남동구청장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
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생략)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
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
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6.·7. (생략)

<신설>

----- 남동구-----

-----.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
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
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
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
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
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9.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제13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
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

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 설>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독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
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
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
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
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0호의
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
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
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
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
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
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
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 상

② (생 략)

제22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 훈련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책임관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 ① -----

-----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

④ (생 략)

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
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현행과 같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2019-891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05. 0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9.05.03.~2019.05.17.

공고대상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2대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면 화	2019-19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2대)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4.29. ○ 견인일 : 2019.05.17.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4 흥국생명빌딩 1층 스타벅스 옆 골목 주차선 내
	2019-20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4.29. ○ 견인일 : 2019.05.17.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논현로 105 논현휴먼시아 509동 주 현관 입구
		이하여백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 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19-0019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3동 1124) 예술로 174 흥국생명빌딩 1층 스타벅스	2019.05.17. 이후	견인예정	
2	2019-0020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2동 633-1) 논현로 105 논현휴먼시아 509동 주 현관 앞구	2019.05.17. 이후	견인예정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4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19. 04. 29.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9. 04. 29. ~ 2019. 05. 13.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 반 음식점	1999- 0202751	더연어	배*규	석산로 5, 1층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01-23	2019-04-29

6.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19. 04.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4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05. 15.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9. 04. 30. ~ 2019. 05. 14.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반 음식점	2013- 0200153	대공원파전	차*수	연락골로 13 (운연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10.01	2019.05.15.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05. 14.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19. 04.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 간석1동 공고 제2019-53호

폐기물처리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8조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4. 30.

남 동 구 간 석 1 동 장

가. 공고기간 : 2019년 04월 30일 ~ 2019년 05월 20일(21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역 : 별첨 참조

다. 안내사항

1.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인천시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문의 사항은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032-453-6321, 6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차량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보내실곳(FAX) : 032-453-5318 (간석1동)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내역

부서명	과목명	부과번호	납부자구분	납부자명	납부자상태	부과구분	부과일자	최종납기일자	부과금액	부과대상	우편번호	주소
간석1동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000014-00	개인	김○○아	거주자	수시분	2019-04-12	2019-04-30	100,000	2019.03.04. 12:16경, 규격봉투미사용 (남동대로897번길 75 신비주택 앞)	22609	인천광역시 서구 가천로42번길 ○○, ○동 ○○○호 (마전동)
간석1동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000021-00	개인	황○선	거주자	수시분	2019-04-12	2019-04-30	100,000	2019.03.04. 15:24경, 규격봉투 미사용 (남동대로897번길 55-4)	215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7번길 ○○, ○○호 (간석동, ○○맨션)

공 고

남동구 간석1동 공고 제2019-5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8조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4. 30.

남 동 구 간 석 1 동 장

가. 공고기간 : 2019년 04월 30일 ~ 2019년 05월 20일(21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역 : 별첨 참조

다. 안내사항

1.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인천시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문의 사항은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032-453-6321, 6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차량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보내실곳(FAX) : 032-453-5318 (간석1동)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서명	회계연도	과목코드	과목명	부과번호	납부자구분	납부자명	납부자상태	부과구분	부과일자	최종납기일자	부과금액	본세	가산금	분납이자	최초부과금액	부과대상	무편번호	주소
간석1동	2019	41-288133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000038-00	개인	김○영	거주자	수시분	2019-04-11	2019-04-26	80,000	80,000	0	0	80,000	2019.03.29. 16:20경, 규격봉투 미사용(구월로52번길 27 앞)	22780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77번길 5, 가동 504호 (신현동, 동진아파트)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5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21번길 28-22 외 5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21번길 16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략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략 (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7-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21번길	28-22	2009.11.16	앵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5.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621번길 28-2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8-22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5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372번길	21-6	2009.11.16	구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5.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372번길 21-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1-6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15외 1필지(4-7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98번길	43	2009.11.16	용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5.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용천로98번길 4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3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5	2009.11.16	수현마을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9.5.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수현로 1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5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면동	1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	3578	2009.7.10	수원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	2019.5.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수인로 357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578를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4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로60번길	30	2009.11.16	경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19.5.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신로60번길 3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0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고개로621번길 16(고잔동)	2019.05.0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5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372번길 21-6(만수동)	2019.05.0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50(구월동)	2019.05.0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7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98번길 41(구월동)	2019.05.0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5(장수동)	2019.05.0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 3580	2019.05.0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